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4년 4월 14일

신한BNPPBEST법인용MMFGS-1호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. 종류 C1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보수 인하
2. 종류 C-P 수익증권의 명칭 변경(변경 후: C-r)
3. 투자제한 관련 문구 변경

| 항목   | 정정전   | 정정후   |
|--|---|---|
| 1. 종류 C1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보수 인하 및 2. 종류 C-P 수익증권의 명칭 변경(변경 후: C-r): 제39조(보수) | 제39조(보수)<br>① ~ ② (생략)<br>③ (본문 생략)<br>1. 종류 C1 수익증권<br>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[ 0.60 ]<br><b>B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[ 0.65 ]</b><br>C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[ 0.15 ]<br><br>(이하 생략)<br><br><b>4. 종류 C-P 수익증권</b><br>(이하 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9조(보수)<br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(본문 현행과 같음)<br>2. 종류 C1 수익증권<br>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[ 0.60 ]<br><b>B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[ 0.500 ]</b><br>C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[ 0.150 ]<br>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[ 0.000 ]<br><br>(이하 현행과 같음)<br><br><b>4. 종류 C-r 수익증권</b><br>(이하 현행과 같음) |
| 2. 종류 C-P 수익증권의 명칭 변경 (변경 후: C-r):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              |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br>① ~ ② (생략)<br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실시명의로 법인에게만 판매한다.<br>(타 종류 수익증권 생략)<br><b>종류 C-P 수익증권</b>  |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br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실시명의로 법인에게만 판매한다.<br>(타 종류 수익증권 현행과 같음)<br><b>종류 C-r 수익증권</b>  |
| 2. 종류 C-P 수익증권의 명칭 변경 (변경 후: C-r):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               |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br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br>1. 종류A-u2 수익증권<br>2. 종류C1 수익증권<br>3. 종류C-w 수익증권<br><b>4. 종류C-P 수익증권</b><br>(이하 생략) |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br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br>1. 종류A-u2 수익증권<br>2. 종류C1 수익증권<br>3. 종류C-w 수익증권<br><b>4. 종류C-r 수익증권</b><br>(이하 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|
| 2. 종류 C-P 수익증권의 명칭 변경 (변경 후: C-r): 제40조 (판매수수료)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0조 (판매수수료)<br>(생략)<br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<br>1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w수익증권, <b>종류 C-P 수익증권: 없음</b><br>2. 종류 A-u2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98 이내<br>(이하 생략)   | 제40조 (판매수수료)<br>(현행과 같음)<br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<br>1. 종류 A-u2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98 이내<br>2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w 수익증권, <b>종류 C-r 수익증권: 없음</b><br>(이하 현행과 같음)  |
| 2. 종류 C-P 수익증권의 명칭 변경 (변경 후: C-r): 제40조 (판매수수료)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0조 (판매수수료)<br>(생략)<br>1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w 수익증권, <b>종류 C-P 수익증권: 없음</b><br>2. 종류 A-u2 수익증권: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br>(이하 생략)   | 제40조 (판매수수료)<br>(현행과 같음)<br>1. 종류 C1, 종류 C-w, <b>종류 C-r: 없음</b><br>2. 종류 A-u2: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br>(이하 현행과 같음)   |
| 3. 투자제한 관련 문구 변경: 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9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<br>① (본문 생략)<br>1. ~ 9. (생략)<br><b>10.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</b><br>(이하 생략)  | 제19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<br>① (본문 현행과 같음)<br>1. ~ 9. (현행과 같음)<br><b>(삭제)</b><br><br>(이하 현행과 같음)  |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. 종류 C1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보수 인하
2. 종류 C-P 수익증권의 명칭 변경(변경 후: C-r)
3. 투자제한 관련 문구 변경
4. 집합투자업자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5. 문구 추가

| 항목   | 정정전   | 정정후   |
|--|---|---|
| 1. 종류 C1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보수 인하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|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-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<b>종류 C1 수익증권: (타 보수 생략), 판매회사 보수: 0.065%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-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<b>종류 C1 수익증권: (타 보수 현행과 같음), 판매회사 보수: 0.050%</b>  |
| 2. 종류 C-P 수익증권의 명칭 변경 (변경 후: C-r):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&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&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|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&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&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<br><b>종류 C-P 수익증권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&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&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&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 &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<br><b>종류 C-r 수익증권</b> |
| 3. 투자제한 관련 문구 변경: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 대상   |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 대상 다. 투자제한 (생략)<br><b>10.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</b><br>(이하 생략) |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 대상 나. 투자제한 (현행과 같음)<br><b>(삭제)</b><br><br>(이하 현행과 같음)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4. 집합투자업자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 규모 |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 규모<br>- <b>최근현황 갱신(기준일: 2014년 3월 31일)</b>  |
| 4. 집합투자업자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|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|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br>- <b>최근현황 갱신(기준일: 2014년 3월 31일)</b>  |
| 5. 문구 추가: 제2부 14.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부 14. 과세<br>(신설)                 | 제2부 14. 과세<br>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)<br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br>A. 세액공제(2014년 1월 1일부터): 근로자의 추가분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 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<br>B. 과세 이연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<br>C.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의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은 연간 1,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.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 ( <a href="http://pension.fss.or.kr">http://pension.fss.or.kr</a> )의 '과세제도안내' 참조<br>※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. 종류 C1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보수 인하
2. 종류 C-P 수익증권의 명칭 변경(변경 후: C-r)
3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4. 문구 추가

| 항목   | 정정전  | 정정후  |
|--|--|--|
| 1. 종류 C1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보수 인하: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        |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<br>-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<b>종류 C1 수익증권: (타 보수 생략), 판매회사 보수: 0.065%</b> |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<br>-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<b>종류 C1 수익증권: (타 보수 현행과 같음), 판매회사 보수: 0.050%</b>   |
| 2. 종류 C-P 수익증권의 명칭 변경 (변경 후: C-r):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|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<br><b>종류 C-P 수익증권</b>  |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<br><b>종류 C-r 수익증권</b>  |
| 3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1부 5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     |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  |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<br>- <b>최근현황 갱신(기준일: 2014년 3월 31일)</b>   |
| 4. 문구 추가: 제2부 2.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부 2. 과세<br>(신설)  | 제2부 2. 과세<br>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)<br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br>A. 세액공제(2014년 1월 1일부터): 근로자의 추가분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 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<br>B. 과세 이연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<br>C.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의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은 연간 1,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.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 ( <a href="http://pension.fss.or.kr">http://pension.fss.or.kr</a> )의 '과세제도안내' 참조 |